

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24-141호

반동 7구역(반동457-67번지 일대)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
강북구 반동 457-67번지 외 65필지 '반동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'과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」 제23조의2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29일

강 북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명 칭: 반동7구역(반동 457-67번지 일원)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반동 457-67번지 일대
- 면 적: 5,617.90m²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조합의 명칭: 반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(조합장: 박수식)
- 사무소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59가길 36, 201호

4. 조합설립인가일 : 2022. 06. 13.

5. 조합설립취소일 : 2024. 11. 29.

6.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(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) 제1항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청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4호 ‘변동2지역(변동 454번지 일대)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’의 내용에 따라 변동 7,8,9 구역 통합 시행을 위한 조합 해산 신청

※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73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